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
발주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2024. 03.



rl.rl.	인천스타트업파크	김병수 차장	TEL:032-228-1202	FAX:032-228-1225
담당	인천스타트업파크	이호림 과장	TEL:032-228-1219	FAX:032-228-1225

목 차

I. 과업개요 ····································
II. 과업 세부내용 3
Ⅲ. 사업추진세부절차 ····································
Ⅳ. 과업수행지침 22
V. 입찰안내 ······ 27
V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37
※ 별지서식 41

I 과 업 개 요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년 12월 6일

다. 사업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VAT포함) **위 사업예산에서 VAT를 제외한 본 용역의 추정가격은 금90.909.091원

라.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인천지역제한, 공동이행(컨소시엄) 허용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주요내용: 혁신제품 지정 신청등록 및 공공분야 판로지원 5개사

2. 과업목적 및 성과품

가. 과업목적: 혁신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을 통한 외형성장 지원

나. 성과품 제출목록

연번	성과품	세부내용	수량	형식
1	최종보고서 가. 최종 결과 보고서 (사진증빙포함) 나. 기타 발주처가 요청한 성과 관련 자료 등		3부	무선제본
2	증빙자료	가. 선금 지출 자료 일체 나. 컨설팅·멘토링·강연·행사 등 전문가 프로필 다. 컨설팅·멘토링·강연·행사 등 건별 결과 보고서 ☞ 용역사는 건별 결과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 발주처는 선정기업 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만족도 낮거나 성과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면 성과물 불인정 처리함 라. 수요기관(구매기관) 담당자 연락처 포함한 리스트 마. 구매의향서, 세금계산서 등 판로지원 자료 바. 사회적경제기업 등 유관기관 연락처 포함한 리스트 사. 기업소개, 사업소개 등 관련 홍보물 및 콘텐츠 일체	1식	전자파일

3. 사업추진단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정량적목표 🐯 표

[1] * 인천소째 본점, 공장, 연구소, 지점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 참가기업 : 타 지역 기업의 경우 오집공고 마감일 전까지 상기 어느하나 인천관내 설치 필수 모집당신청 : 발주처는 내부 기준에 따라 명가항목 및 가접표(인천기업 등 우대, 별도 제공 14 기준에 따라 명가항목 및 가접표(인천기업 등 우대, 별도 제공 14 기준에 따라 명가항목 및 가접표(인천기업 등 우대, 별도 제공 14 기준에 따라 명가항목 및 가접표(인천기업 등 우대, 별도 제공 14 기준에 따라 명가항목 및 가접표(인천기업 등 우대, 별도 제공 14 기준에 따라 명가항목 및 가접표(인천기업 등 우대, 별도 제공 14 기준에 따라 명가항목 및 가전표(인천기업 등 유대)일 등록 지원 : 충앙행정기관 소판 「유RD) 13중 신청지원 :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상생생대제조성처 「공공기관 기술마켓, 등록 지원 :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제출인증」 신청지원 :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상생생대제조성처 「공공기관 기술마켓, 등록 지원 :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제출인증」 신청지원 : 조달청 「공공역신수요기반 역산제품 기술기반 되어 제공 기장 기상 인청지원 : 학원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발주처 요구 기타 업무 일체 : 산업종산자원부 「차세대일류상품 핵산제품 지정 나상지원 등 소달점 「역산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발주처 요구 기타 업무 일체 : 산업종산자원부 「차세대일류상품 핵산제품 지정 1시청지원 등 조달점 「역산제품 지정 사업지원 등 기약 기업기업 등 전원지를 제공 시청지원 등 경기부 '중소기업기술 청보건용원' 인정 R&D : 충연행장기관 소판 「우수연구개발 혁산제품 지정 1점 전공 인정 R&D : 학구산업기술 전용협회 인증심사당' 인정 R&D : 작보는 한국산업기술 진용협회 인증심사당' 인정 R&D : 학경산업 '한국산업기술 진용협회 인증심사당' 인정 R&D : 학경산업 '한국산업기술 진용협회 인증심사당' 인정 R&D : 학경산업 '한국산업기술 진용형험 인정 R&D : 학경산업 '한국산업기술 진용함' 한국에 대지 기술 한국원 '인정 R&D : 학경산업 '한국산업기술 진용함' 인정 R&D : 학경산업 '한국관건산업 '일정 R&D : 학경산업 '한국산업건 등 관원 '전청 R&D : 학경산업 '한국산업건 등 문원 '전청 R&D : 학경산업건 등 문원 '전청 R&D : 학경산업건 '전청 R&D : 학경산업건 등 문원 '전청 R&D : 학경산업건 등 문원 '전청 R&D : 학경산업건 등 문원 '전청 R&D : 학경산업건 '전청 R&D : 학경산업건 등 문원 '전청 R&D : 학경산업건 '전청 R&D : 학경산업건 등 문원 '전청 R&D : 학경산업건 등 문원 '전청 R&D : 학경산업건 '전청 R&D : 학경산업건 등 문원 '전청 R&D :	과업명	내 용					
작산제품 수준안행정기관 소관 「R&D_13종 신청지원 선전부한국산업가술진형원 시압화지원 산업부한국산업가술진형원 시압화지원 산대부 해정안전부 「재난 안전 제품인증」신청지원 한정안전부 「재난 안전 제품인증」신청지원 야기 부처별 「신기술 민증」신청지원 야기 부처별 「신기술 민증」(제)신청, 산업부『신제품 인증」(제)신청 수조달청「공공학산수요기반 학산제품 기술개발 사업」시방구매 연계향 신청지원 학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발주처 요구 기타 업무 일체 산업통산자원부 「차세대일류상품 혁신제품 지정」신청지원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신청지원 조로상 학산제품 지정」신청지원 조로당 학산제품 지정」신청지원 *중안행정기관 소관 「우수연구개발 학산제품 지정」13종 신청지원 행안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증심사람 '인정 R&D *중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증심사람 '인정 R&D *소로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화지원 Hub살' 인정 R&D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정 R&D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정 R&D 산업형 '한국인집진흥원' 인정 R&D 산명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정 R&D 산명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정 R&D 산명형 '한국산업기술전기술원' 인정 R&D 산명형 '한국산업기술전기술원' 인정 R&D 산명형 '한국산업기술전기술원' 인정 R&D 산명형 '한국산업기술전기원' 인정 R&D 산명형 '주의안진흥원' 인정 R&D 산명형 '한국산업기술원' 인정 R&D 산명형 '한국산업기술명가관리왕' 인정 R&D 산명형 '주의안진흥원' '안정 산명형 '전형자원 등 '주의안진흥원' '안정 산명형 '전형자원 등 '주의안진흥원' '인정 R&D 산명형 '전형자원 등 '전화원 등 '전형자원 등 '전화원 등 '전	참가기업	- 타 지역 기업의 경우 모집공고 마감일 전까지 상기 어느하나 인천관내 설치 필수					
학신대품 사업부한국산업가술진흥원 사업화자원실 「차세대 세계교류상품(생산가업) 산청지원	20.T	•관계자	네트워킹 포함 선정기업 환영회 및 사업 소개(25명규모)	1식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신청지원 '공급/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향 등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신청지원 '공급/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향 등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수요가 제안형(수요기획 개발형)」국방분야 신청지원 등 *등하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신청지원 *중앙행정기관 소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13중 신청지원 *행안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난안전사업팀' 인정 R&D *정부 '한국산업기술전보진흥원' 인정 R&D *3 기9종 ************************************		지정트랙 (A-준비)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업화지원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지원 •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성처 「공공기관 기술마켓」 등록 지원 •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제품인증」 신청지원 • 9개 부처별 「신기술 인증」 (재)신청, 산업부「신제품 인증」 (재)신청 • 조달청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시업」 '시범구매 연계형' 신청지원				
● 한로지원 • 기업진단 기반 수요기관 발굴 및 1:1 구매 상담(수요기관 등록 행정지원 등) ● 수요자(인천11개지자체, 산하기관 등 42개, 교육청) 과제 도출 및 문서작성 등 • 중기부「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구매기관 확보 및 과제 신청지원 등 ● ** 중기부「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구매기관 확보 및 과제 신청지원 등 • 국방부「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안 신청 ● ** 조달청「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Scale-up형' 신청지원 (가창)실증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수요기관 구매담당자 섭외, 사회적경제기업 등 유관기관 섭외, 제품·공공구매제도 홍보, 구매의향서 작성지원 등 하반기 (가칭)붐업페스티벌 우수기업 구매상담회: 인천 관내외 유관기관 및 구매담당자 초청·기업 1:1 구매상담, 구매의향서 작성지원, 수요기관등록 지원 등 수 시 (가칭)인천스타트업파크 시범구매 지원단 지원: 발주처는 인천시·산하기관 공동으로 합동 MoU체결, 용역사는 협약대상자들의 시범구매지원	컨설팅 /	지정트랙 (B-신청)	•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발주처 요구 기타 업무 일체 • 산업통산자원부「차세대일류상품 혁신제품 지정」신청지원 • 조달청「혁신제품 지정」신청지원 '공급/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형' 등 • 조달청「혁신제품 지정→수요자 제안형(수요기획 개발형)」국방분야 신청지원 등 • 특허청「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신청지원 • 중앙행정기관 소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13종 신청지원 • 행안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난안전사업팀' 인정 R&D • 장리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정 R&D •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인정 R&D •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인정 R&D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정 R&D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 R&D • 환경부 '하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 R&D • 농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인정 R&D • 하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정 R&D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인정 R&D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인정 R&D •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인정 R&D				
설반기 (가칭)실증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수요기관 구매담당자 섭외, 사회적경제기업등 유관기관 섭외, 제품·공공구매제도 홍보, 구매의향서 작성지원 등 한반기 (가칭)붐업페스티벌 우수기업 구매상담회: 인천 관내외 유관기관 및 구매담당자 초청-기업 1:1 구매상담, 구매의향서 작성지원, 수요기관등록 지원 등 수 시 (가칭)인천스타트업파크 시범구매 지원단 지원: 발주처는 인천시·산하기관 공동으로 합동 MoU체결, 용역사는 협약대상자들의 시범구매지원		 트랙 (판로)	•기업진단 기반 수요기관 발굴 및 1:1 구매 상담(수요기관 등록 행정지원 등) •수요자(인천11개지자체, 산하기관 등 42개, 교육청) 과제 도출 및 문서작성 등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구매기관 확보 및 과제 신청지원 등 •국방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안 신청				
판로지원 하반기 담당자 초청-기업 1:1 구매상담, 구매의향서 작성지원, 수요기관등록 지원 등 1식 수 (가칭) 인천스타트업파크 시범구매 지원단 지원: 발주처는 인천시·산하기관 공동으로 합동 MoU체결, 용역사는 협약대상자들의 시범구매지원		상반기	(가칭)실증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수요기관 구매담당자 섭외, 사회적경제기업 등 유관기관 섭외, 제품·공공구매제도 홍보, 구매의향서 작성지원 등				
		하반기 담당자 초청-기업 1:1 구매상담, 구매의향서 작성지원, 수요기관등록 지원 등 (가칭) 인천스타트업파크 시범구매 지원단 지원: 발주처는 인천시·산하		1식			
	<u></u> 5성과보고	• 완료계	·	1식			

※위 정량적 목표를 기초로 컨설팅 횟수 추가 및 기타 창의적 판로지원 방안 등을 제안한 자를 선호함

< 과 업 요 약 > 트 랙 명 목 적 내용 목표 (준 비) 유형별 혁신제품 자격 준비 25건 이상 [1]혁신제품지정 컨설팅/교육 (신 청) 유형1, 유형2 지정 신청 (5건/1개사) (판 로) 관련사업신청, 구매상담 일체 (상반기) 시범구매 상담회 행사 [2]실증제품판로지원 판로지원 → (하반기) 붐업-우수기업 상담회 행사 1식 (수 시) 시범구매 지원단 구매연계

	유형1	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원	
	(부처발굴형)	²⁾ 혁신성 인정 제품을 부처별 주관기관(기재부·조달청)에 추천	
혁신제품	유형2	³⁾ 스카우터 추천	키서티
학전제품 지정	(공급자제안형)	4)혁신성장지원·국민생활문제·국민재난 안전분야 중 신청	천설팅 5회이상
716	유청기	5)공공기관 제안 도전적 수요 과제(공모)	2440
	유형2 (수요자제안형)	⁶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과제(자유제안형)	
		⁷⁾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과제(수요기획·개발형)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수요기관 관계자 대면 미팅 주선 등	
실증제품	인천시, 산하기관, 교육청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대한 혁신제품 구매상담회 행사	
판로지원		수요기관 발굴 및 시범 사용 등록 지원	1식
		선정기업 제품, 정책제도, 경영평가, 구매 목표제 홍보 등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판로지원 관련 과업	

- 1) 최근 5년내 중앙행정기관 소관 R&D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대상 중기부 등 기관별 별도 지정공고 게시
- 2) 신제품(NEP,산업부), 신기술(NET,운영부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중기부), 우수특허제품(특허청),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산업부), 공공기관 기술마켓(국토부.산업부), 재난안전제품인증(행안부) 인증받은 기업 대상 별도 혁신제품 지정공고 안내하며 운영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3)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등) 전문가(VC, 창업보육센터, 지역TP 등)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추천위원)가 추천하면, 조달청이 발굴된 기업대상 데모데이(국민평가단+전문위원이 혁신성 공공성을 발표심사) 개최를 통한 혁신 제품 지정
- 4) 혁신성장 지원분야(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등 10개), 국민생활문제분야(안전, 환경 등 7개), 국민재난 안전 분야(탄소중립 등 3개)중 상세항목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불가 🖙 기업이 자유롭게 문제 해결책 제시 ☞ 리스트 공개하고 시범구매 수요조사를 통해 매칭
- 5)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여 대상 과제를 정하고, 정해진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제품공모
- 6) 상기 심의 결과 미선정된 과제는 인큐베이터(한국조달연구원)가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보정해주는 숙성 과정을 거쳐 과제를 구체화
- 7) 조달청이 수요기관 모집 및 심의선정 후 해당 기관 포함한 수요개발단(조달청, 전문가,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이 최종과제 도출 및 구체화. 이 과제를 기초로 혁신제품 지정공고를 게시하며, 과제당 5억 원 내외 시범구매 지원 ☞ 예) 국방부 '안티드론' 과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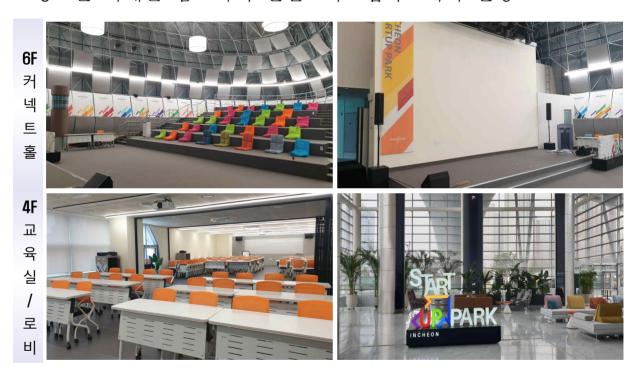
- 1. 참가기업 모집 선정 정량목표Ⅱ
 - 가. 과업범위
 - ◈ 목표 경쟁률 10:1 기준 최종 5개사 선정을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한다
 -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채널별 유망기업을 발굴 한다
 - ◈ 발주처 위촉 전문위원 5인을 분과별 구성하여 기업선정 업무를 보조한다
 - 1) 인천관내외 사업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홍보기간, 목표, 방향, 대상, 전략 반영한 문서작성 등
 - 제안사만의 특화된 홍보 채널 및 방안 포함

목	丑	경쟁률 10 : 1					
방	향	인천소재 유망기업	Pool 구성 및 혁신제품 공공	당구매 인지도 제고			
대	상	DB(007H)	타겟1(00개)	타겟2(00개)			
홍보	채 널	홍보채널	홍보채널	홍보채널			
조 전 략	포인트	흥행을 위한 유인책	흥행을 위한 유인책	흥행을 위한 유인책			

- 2) 홍보 계획에 따라 목표경쟁률 달성하도록 기업모집을 한다
 - 사업 흥행을 위한 기업모집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발주처 확보 65개 수요기업 외 제안사만의 특화된 채널 사용
- 3) 발주처가 총괄하는 참가기업 평가 선정 업무를 보조한다
 - 평가위원회는 분과별 5인 기준으로 발주처가 구성·운영
- 평가 관련 단순 안내, 자료 취합 등 발주처 지시 사항 이행 등 나. 성과품 제출 항목

① 홍보계획안 1 ○ 기업모집 결과 ○ 기업모집 본교 ○ 기업 안내 증빙자료 ○ 기업모집 본교 ○ 기업 안내 증빙자료 ○ 기업모집 등 평가장 비품

- 2. OT(선정기업 환영회) 정량목표2
 - 가. 과업범위
 - ◈ 세부 프로그램을 포함한 발주처의 환영회 개최를 보조한다
 - ◈ 보도자료작성, 포스터·X배너·현수막 게시 등 대내외 홍보 및 안내를 한다
 - ◈ 참석자 환대를 위한 웰컴 음료 등을 준비한다
 - 1)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발주처의 환영회를 보조한다
 - X배너, OT자료, 현수막, 명찰, 참석자명부 등 소모품 제작
 - 세부 프로그램에 참가자 및 사업소개, 네트워킹 시간 반영
 - 장소는 아래를 참고하여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진행



- 2) 케이터링을 참석자 대상 제공한다
 - 안내를 전담하는 인력 1명을 배치하여 편의 제공
 - 커피, 물, 제과제빵 등 F&B 준비 및 참석자 환대 등
- 나. 성과품 제출 항목

① 환영회 계획안(디자인)

- ■ifez, itp, 인천스타트업파크 소개
- 사업소개, 추진일정, 질의응답
- 선정기업 소개 및 네트워킹

② 홍보물 제작

- ┃■ 기업별 1분 소개자료
- ┃■X-베너, 현수막 제작 설치
- ■참석자 명찰 제작 및 교부

③ **케이터링**

- ■외부 날씨를 고려한 음료
- ■참석자 환대를 위한 다과
- ■운영 인력 1인

3. 컨설팅/교육 **정량목표**③

가. 과업범위

- ◈ 혁신제품 신청 준비상태가 미비하면 준비를 위한 컨설팅·교육을 한다
- ◈ 혁신제품 지정공고 기간내 신청하도록 문서작업 등 제반사항 지원한다.
- ◈ 구매자를 발굴하고, 행정지원을 포함한 구매계약 등 일체를 지원한다
- 1) 제반 비용 고려하여 혁신제품 지정트랙(A-준비)기업을 지원한다
 -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국가 R&D」, 부처별 「신기술 인증」(재)신청
 - 산업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제품 인증」(재)신청
 - 산업부&한국전력공사「공공기관 기술마켓」등록
 - 행안부「재난 안전 제품인증」신청
 - 하단 p7, 조달청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시범구매연계형)」신청
 -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발주처 요구 기타 업무 일체 수행
- 2) 제반 비용 고려하여 혁신제품 지정트랙(B-신청)기업을 지원한다
 - 하단 p8,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 하단 p9,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하단 p12, 「차세대일류상품 혁신제품 지정」신청
 -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신청
- 3) 실 구매자를 섭외하고 판로지원트랙(판로)기업을 매칭 지원한다
 - 기업진단 기반 1:1 **구매상담**, 혁신제품 **수요기관 등록** 등 행정지원
 - 하단 pl3,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구매자 확보 및 과제신청
 - 하단 pl4, 국방부「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안 및 신청
 - 하단 p7, 조달청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Scale-up형)」 신청
- 나. 성과품 제출 항목(※컨설팅 보고서는 발주처 승인 건만 인정)

1 A-준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로드맵
- ■신청, 인증 등 관련 비용
- ■제안사만의 특화된 전략

② **B-신청**

- ┃■ 혁신제품 지정 연간 일정표
- 판로연계를 위한 계획안
-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

③ **판로**

- ■수요기관 확보 계획안
- 시범구매(조달청,중기부)매칭안
- ■진단기반 기타 판로지원 일체

참고1. 조달청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 □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 혁신제품 개발로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해결방안 연구 및 고도화 지원
 - 추진체계
 - 조달청 총괄 하에 전문기관-협력기관이 사업을 관리하고 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수행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
 - 지원유형 사례

과제 유형	시범구매연계형 Scale-up형				
지원 내용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기존 혁신제품(유형2)의 현장 적용성 확대 및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지원 규모*	과제당 10억 원 내외, 2년 내외	과제당 3억 원 내외, 1년 내외			
및 지원 기간	('23년 예산/ 9개월) 과제당 375백만원	('23년 예산/ 9개월) 과제당 225백만원			
선정 과제 수	2개 내외	4개 내외			
최종 성과 목표	혁신제품 지정 사전요건 확보 ①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②지재권 확보(또는 세부확보계획) ③물품식별번호 발급 ④직접생산증명서 등	목표시장 준비 등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 수준 상향, 인증 취득, 시험성적 확보 등)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 (2차년도 수행 시, 유형2지정 절차 진행)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 의 8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70% 이하 (그 외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하					
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Ⅰ (중계기업) 해당 연구개말기관 기관부담연구개말비의 10% 이상				

- * 과제당 지원규모, 선정 과제수는 협약체결시기·예산집행 상황·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참고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최근 5년 중앙행정기관 등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서 최종 평가 결과 '보통' 이상 받은 제품
 - 기관별 혁신제품지정 공고신청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기관명	신청방법
 (행안부) KEIT	(공고) 행정안전부 <mark>홈페이지▷ 뉴스소식▷ 새소식▷ 알립니다▷ 혁신제품 검색 확인</mark>
재난안전사업팀	(신청) ITECH 홈페이지▷ 로그인▷ 알람정보▷ 공자사항▷ 혁신제품 검색신청(※행안부 공고O, 해경청X)
(중기부) TIPA	(공고) TIPA 홈베이지▷ 지원사업▷ R&D자원사업▷ 사업공고 목록보기 확인
성과확산실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과제신청▷ 기업주도형▷ 지원사업구분'전체'▷ 과제신청대상▷ 혁신제품자정제도
(과기부) KOITA	(공고) KOTA 홈페이지▷ 협회소개▷ 협회소식▷ 공자시항 확인
시상운영팀	(신청) KOTA 시상운영팀 홈페이지▷ 로그인▷ 지정신청▷ 혁신제품지정신청▷ 기업제품정보입력▷ 제출
(국토부) KAIA	(공고) KAIA 홈페이지▷ 알림▷ 공자사항▷ 진흥원소식 확인
사업화지원Hub실	(신청) 기업지원하브 홈페이지▷ 기업참여▷ 혁신제품지정신청▷ 공고문 우측 '신청하기'클릭
(산업부)	(공고) KIAT 홈페이지▷ 시업자료▷ 시업공고▷ '혁신제품'검색▷ 공고확인(※산업부R&D, 차세대일류상품)
KIAT	(신청) 상동 공고문 서류 작성▷ KIAT 사업회전략실 이메일(inno@kiat.or.kr)제출
시압화전략실 KEPCO	(공고) KETEP 홈페이지▷ 정책과소식▷ 공자사항▷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자체에 너지R&D)
에서쌍제왕자	(신청) 에너지기술미켓 홈페이지▷ 로그인▷ 혁신제품자정공고▷ 공고문클릭▷ 히단 버튼 생성되며 업로드 가능
(환경부) KEITI	(공고) KEITI 홈페이지▷ 알림/지식마당▷ 공자/공고▷'혁신제품'검색
기술평가실	(신청) 상동 공고문 다운로드▷ 관련문서 작성▷ KEITI 기술평가실 이메일 (innopro@keiti.re.kr)제출
(농축산부) IPET	(공고) MAFRA 홈페이지▷ 알림소식▷ 공자공고▷ 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 공고확인
기술상용화실	(신청) R&D 홈페이지▷ 로그인▷ 과제관리▷ 공고접수▷ 핵시제품신청▷ 작성▷ 과제정보고제검색▷ 팝압창 과제선택
(해수부) KIMST	(공고) MOF 홈페이지▷ 알림뉴스▷ 공자사항▷ 혁산제품 검색 확인
성과확산실	(신청) KIMST 홈페이지▷ 로그인▷ 혁신제품자정▷ 신청접수▷ 제출서류등록▷ 신청하기 클릭
(산림청) FTIS	(공고) FTIS 홈페이지▷ 열린미당▷ 공자사항▷ 혁신제품 신청접수 공고 클릭▷ 첨부파일 작성제출
R&D관리실	(신청) 상동 공고문 다운로드 및 작성 ▷ 압축파일 1개 '신청기업명_제품명 이메일(ftisrnd@kofpi.or.kr)제출
(소방청) NFIRE	(공고) NFIRE 홈페이지▷ 알림미당▷ 공자사항▷ 혁신제품 검색 및 공고 클릭
소방정책연구실	(신청)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자침」별지 제5호~8호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이메일(jjh1028@korea.kr)제출
(해경청) KEIT	(공고) KCG 홈페이지▷ 새소식/알림▷ 고사공고▷ 혁신제품 검색 및 공고 클릭
재난안전사업팀	(신청) ITECH 홈페이지▷ 로그인▷ 알림정보▷ 공자사항▷ 혁신제품 검색 신청(※해경청 공고O, 행안부X)
(경찰청) KIPoT	(공고) 경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공자사항▷ 혁신제품검색(검색 결과 상위노출 안됨 1~2페이지 확인)
기반조성실	(신청) 상동 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thistree83@kipot.or.kr)제출

참고3.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 □ 공급자제안형
 - 공급자제안형 신청 분야
 - 아래의 세개 분야 중 택1, 상세항목 1개 신청(중복신청 금지)

신청분야	상세항목			
현시성장 지워 부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100 ME E4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구미제나 . 아저 브아	①탄소중립 ②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제품 ③재난안전제품* * 자세한 사항은 혁신장터→혁신시제품 지정→신청공고건 선택→공고문 별첨문서 확인			
거인세리 1인선 군야	* 자세한 사항은 혁신장터→혁신시제품 지정→신청공고건 선택→공고문 별첨문서 확인			

- 혁신제품 스카우터(추천위원) 추천제품 신청분야
 - VC, 창업보육센터, TP, 신용보증기금 등 조달청이 기술·금융·창업 전문가를 스카우터로 위촉하여 혁신기업 발굴 및 추천
 - 추천 분야는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뉴딜, 글로벌 선도분야(자율주행, 로봇, 스마트시티 등), 국민생활분야(건강, 복지, 교육 등)
 - 국민평가단, 전문평가위원이 데모데이 행사를 통해 스카우터 발굴 기업의 발표평가를 심사하고 상위 20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 제안 도전적 수요과제
 - 별도 공모 기간 수요기관이 제안한 분야 중 심의를 통해 최종과제로 확정 짓고 이를 해결할 공급자를 공개 모집
 -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과제
 - 미선정된 도전적 수요과제는 한국조달연구원이 조금 더 쉽게 구체화 하는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최종과제로 확정, 공급자 공개 모집
 - 수요 기획·개발형 과제
 - 혁신장터 공지사항 '수요기획 개발형 인큐베이팅 희망기관 모집' 신청 관련, 기관의 현안이슈,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혁신수요 기재제출
 - 조달청은 선정된 희망기관(예. 국방부 등)을 포함한 '수요개발단' 운영을 통해 과제를 구체화 하고, 공급자 공개 모집

- □ 2024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 2024년부터 인큐베이팅 공고는 수요자 제안형에 통합하여 운영 - 공급자 제안형 모집공고 상·하반기 각 1회 진행

구분	제품모집 유형	차수	접수기간	분야 등
	공급자 제안형	1차	′24. 2. 1. ~ ′24. 3. 14.	혁신성장지원 분야,
혁신제품		2차	′24. 7. 8. ~ ′24. 8. 22.	국민생활문제 등
신규지정*	수요자 제안형		상 시	혁신수요 과제 대상
	민간전문가 추천형		수 시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
		1차	′24. 1. 15. ~ ′24. 2. 1.	
	규격추가 ^{**}	2차	′24. 4. 22. ~ ′24. 5. 9.	기존지정
	11 7 7 7 1	3차	′24. 7. 15. ~ ′24. 8. 1.	혁신제품
			′24. 10. 14. ~ ′24. 10. 31.	
	일반국민		상 시	-
혁신수요 과제모집	공공기관**	1차	′23. 12. 1. ~ ′24. 1. 31.	
	0011	2차	′24. 5. 1. ~ ′24. 6. 30.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070-4056-7664, 시범사용 수요매칭 -7525, 계약 -6385), 혁신구매 기관평가 -6385) **혁신조달 전문 지원센터 인큐베이팅(070-4304-5904, 스카우터 -5903, 규격검토 -6414, 구매실적 승인 -6445)

- □ 혁신제품 지정 개편 사항
 -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달정책심의원회 산하 공공수요발굴 위원회는 '23년 혁신구매 목표설정 및 지정 등 사안 심의 의결
 - 기존 3개 트랙에서 2개 유형으로 단순하고, 심사 과정에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참여토록 하여 의견 적극 반영토록 개선

기존	내용		변경	내용
Fast Track I	국가 R&D결과물(각 부처→위원회)	\rightarrow	 유형1	 부처 운영
(FT1)			(FT1,3)	(각 부처→위원회)
Fast Track II	상용화전 시제품(조달청→위원회)		(111,3)	
(FT2)			유형2	조달청 운영
Fast Track Ⅲ	기존 인증제, 주요정책 연계형 제품	П	т 62 (FT2)	고릉 단ᆼ (조달청→위원회)
(FT3)	(각부처→기재부·조달청→위원회)		(Г12)	(고등의 게면치)

※'23년 7월부터 개편 체계 적용되었으나 주요 기관(혁신조달지원센터, 혁신장터, 조달청) 홈페이지의 혁신 (시)제품소개는 변경전 용어를 사용하므로 혼동 주의하여야 하며, '24년 제도·운영방식 변경·조정될 수 있음

참고4. 혁신(시)제품 지정절차

- □ 유형1 부처별 지정 혁신제품
 -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정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 계약 및 시범구매 가능

제품등록	제품신청*	제품평가**	심의예정공고	심의·의결
<나라장터>	<홈페이지>	<평가기관>	<각 기관>	<중앙행정기관→조달 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세부품명제조등록 물품목록번호등록	신청사첨부파일 업로드/이메일제출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종합심사	심의 전 의견수렴 (20일이상)	조달정책심의원회 혁신제품 심의·의결
신청인	신청인	중앙행정기관의 전담기관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환경부 '녹색제품', 산업부 '에너지분야 자체R&D 특허등록제품'은 신청 대상에 해당 됨

- □ 유형2 조달청 지정 혁신(시)제품
 - 공급자 제안형
 - 기업 본인이 신청 후 혁신 시제품 지정 받으면 수요기관 매칭

1단계(신청)	2단계(평가)	3단계(지정)	4단계(구매)
공고 (조달청)	공공 성·혁신성 평가 조달 적합성 검토	혁신제품 지정 혁신장터 등록	수의계약 직접구매 시범구매사업 참여
기업→공고신청	조달청	조달청	수요기관

- 수요자 제안형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수요제기, 적합제품 구매

1단계(신청)	2단계(평가)	3단계(공고)	4단계(이후)
도전적 과제 제안	우선순위 선정	공급기업 대상	공급자 제안형과 동일
도선역 피제 제한	ተረፈተ ረሪ	도전과제 공고	으면서 세지워져 우물
수요기관→조달청신청	조달청	조달청	기업, 조달청, 수요기관

^{**}중앙행정기관별 2차, 3차 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 산업부는 3개 분야 통합공고 진행함에 따라 공공성은 KIAT, 혁신성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평가 진행(p8 기관명에 평가 담당하는 전담기관명을 병행 기재 하였음)

참고5.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

- □ 산업부 혁신제품
 - 세개 분야 통합공고 방식으로 추진
 - 산업부 소관 R&D(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차세대일류상품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 주관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전담
 - 에너지 분야 공동(단독)R&D는「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지정 심의 주관

○ 제출서류 항목

연번	항목	양식	비고
1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나라장터 등록 후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 발급 필수	0	필수
2	○ 혁신제품 설명서 -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 결과 확정 공문(보통/완료 이상), 차세대 세 계일류상품 지정서 등 별도 첨부(해당시)	0	필수
3	○ 약정서(특허 공동 등록시)	0	해당시
4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한글파일 제출)	0	필수
5	○ 자기점검표(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0	필수
6	○ 제품 규격서	0	필수
7	○ 혁신제품 추천서	0	해당시
8	○ 법정의무이행 목록 및 증빙 - 제품 출시, 사용 위한 의무이행 목록(별도 양식) 및 해당 증빙자료 - NEP, KS등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 통과자료 등	0	필수
9	○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 특허등록증(제출 시, 특허원부까지 제출 必) -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가능한 시험성적서 등 - 공공/민간 수요 조사서 등(해당시)	자유 양식 / 발급본	필수
10	○ 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 -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계산서, MOU, 구매계약서 등) - 직접제조의 경우, 직접제조 확인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내역서, 작업공정도,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	자유 양식 / 발급본	필수

참고6.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전담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이 구매평가 심의 후 구매 대상 결정
 - 시범구매 대상 선정된 제품은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자체 예산 사용한다는 점이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와 차이점
- 동 과업의 범위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선정기업이 구매정보망 (SMPP)을 통해 제도 참여 신청을 위한 행정지원 일체를 의미함
- 창업·일반·소액 세 가지 과제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시범 구매 대상 제품은 아래와 같음

<u></u> 여				수의계약	 약 가능
연 번	인증·지정명	관련 근거	소관부처		지방계약법
1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5조	중기부	0	0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조달청	0	0
3	NEP(신제품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부	0	0
4	GS(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과기부	0	0
	과학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산업부	0	0
	환경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환경부	0	0
	신 _{건설} 기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국토부	0	0
	기 술 재난안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행정부	0	0
	인 목재	목재이용법 제18조	산림청	-	0
5	증 농림식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림축산부	-	0
J	_고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농림축산부	-	0
	적 교통 용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국토부	-	0
	제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보건복지부	-	0
	품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해수부	-	0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帮料	-	0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기재부고시)	조달청	0	0
7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중기부	0	0
8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행안부	0	0
9	혁신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조달청 등	0	0
10	녹색기술제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산업부 등	-	-
11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산업부	-	-
12	신업8합 적합성 인증/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산업부	-	-
13	물산업 우수제품등	물산업진흥법 제10조	환경부	-	

참고7. 국방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 □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 군에 도입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용품을 소량 구매 사용 후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신규 군수품 채택
 - 전투지원장비 및 전투지원물자 등 전력지원체계 한정 신청 가능
 - 차량, 전원·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탐지, 측정 등),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소방, 세탁·세척, 냉·난방, 제설/연료/취사 등), 수리부속류
 - 피복/장구류, 특수섬유물자(천막, 낙하산 등), 전기·전자물자(전지 등), 근무지원물자(공구류, 소화기구류 등)

○ 추진절차

단 계	추 진 내 용	담당기관
신청제품 제안(상시)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www.kip.re.kr) ▷ 연구분야 ▷ 국방조달연구센터 ▷ 전문지원분야 ▷ 온라인 신청	한국조달연구원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가업체 결정 후 통보	국방부 (한국조달연구원)
▼ 대면평가 ↓	기업별 발표 및 전문가협의체 평가 [*] [*] 대면평가 B등급 이상 제품에 제품설명회 참가자격 부여	국방부 (한국조달연구원)
▼ 현장실사 ↓	대면평가 B등급 이상 제품 현장 확인* *직접생산여부, A/S 지원능력 등 제출서류 사실여부 등	국방부 (한국조달연구원)
각 군 소요종합 -	국방부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에서 시범사용 품목 선정 및 품목구입비 배정(국방부▷ 각 군)* *단, 군 소요가 없을 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	국방부
▼ 시범구매 •	각 군은 참가기업과 구매계약 [*] 체결 [*] 계약방식은 국가계약법상 일반경쟁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상이	국방부
♥ 운용적합성 평가 ↓	운용 적합성 평가 기간은 품목별 상이(평균 6개월)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처)
후속조치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제품) 현황 관리 및 전파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처)

4. 판로지워 **정량목표**4

가. 과업범위

- ◈ 구매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대 행사 개최 및 구매의향서를 작성한다
- ◈ 발주처 주관 붐업페스티벌 행사의 구매상담회 세션을 기획·운영한다
- ◈ 발주처 추진 시범구매 지원단 포함 수요기관 확보 및 구매연계를 한다.
- 1) 상반기 행사「(가칭)실증제품 시범구매 상담회」개최한다
 - 구매기관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를 섭외하고 부스 상담회 개최
 - 기업홍보물 제작 배포, 구매의향서 작성, 수요기관 등록 지원 등
- 2) 하반기 행사「(가칭)붐업페스티벌 우수기업 구매상담회」개최한다
 - 구매상담회 세션 세부내용 기획 및 운영 전담 등
 - 발주처와 협의하여 30개사 내외 구매 상담 매칭을 지원 등
- 3) 판로지원「(가칭)인천스타트업파크 시범구매 지원단」활용한다
 - 인천시 및 산하기관, 교육청 등 관내 기관 대상 구매 연계지원

연번	구분	기관명	연번	구분	기관명
1	인천시	인천광역시상수도	16	강화군	강화군시설관리공단
2	인천시	인천광역시하수도	17	출자기관	인천투자펀드
3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8	출자기관	인천종합에너지(주)
4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19	출자기관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
5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20	출연기관	인천광역시의료원
6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21	출연기관	인천연구원
7	인천시	인천시설공단	22	출연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8	인천시	인천환경공단	23	출연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9	중구	중구시설관리공단	24	출연기관	인천문화재단
10	미추홀구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25	출연기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11	남동구	남동구도시관리공단(시설)	26	출연기관	여성가족재단
12	부평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7	출연기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13	계양구	계양구시설관리공단	28	출연기관	(재)남동문화재단
14	서구	서구시설관리공단	29	출연기관	서구, 연수구 문화재단
15	연수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30	출연기관	(재)인천중구문화재단

나. 성과품 제출 항목(p20반영 필수)

□ 상반기 행사

- 발주처 협의 홍보물 제작·배포
- ■6개 내외 부스제작 및 배너 등
- 매칭상담, 구매의향서 작성 등

② 하반기 행사

- ┃■ 붐업페스티벌 세션 계획안
- ┃■구매기관 매칭, 행정지원 등
- ■시범구매 수요기관 등록 지원

③ 수시과업

- ■출자출연, 지방공기업 등 섭외
- ■지원단 대상 구매 매칭 연계
- ■수요기관 등록 지원 등

참고8. 혁신(시)제품 시범사용

- □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
 - 혁신장터 접속 ▷ 혁신제품시범구매 ▷ 시범사용신청공고 ▷ 혁신제품 시범 구매를 위한 수요조사 안내(수요기관 대상)클릭 ▷ 공고확인
 - 혁신장터 접속 ▷ 나라장터 등록 인증서로 로그인 ▷ 혁신제품 시범구매 ▷
 시범사용신청공고 ▷ 시범사용신청공고 목록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시범사용 신청서 발췌

구분	내용
1111110	○ 반드시 신청서 작성 내용과 혁신장터(시스템)를 통해 입력하는 단가, 수량, 합계와 일치시켜야함. 상이할 경우 혁신장터 입력 내용을 우선함
시범사용 신청규모	○ 해당 수량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υσπ τ	○ 제품 적합성 검토: 신청한 제품이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및 규격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특정 기관 해당 여부	○ 한국판 뉴딜, 탄소증립 등 주요 정책 관련 사업 추진목적으로 신청한 기관 여부 ※ 해당시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목적 설명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
혁신제품시범사용 참여 이유	○ 신청기관의 신청한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참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정
혁신제품시범사용 참여 이유 상세	○ 시범사용 참여 이유와 신청기관이 신청한 혁신제품의 필요성, 수행과정 요약 설명 ○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혁신 시제품의 필요성), 시범사용 기간 설정 이유 ○ 시범사용 방법 개요
기대효과	○ 수혜자, 주요내용
시범사용 지원사항	○ 시범사용 수행 지원 인력, 사용에 필요한 지원 사항(설치장소 제공 등) ○ 사후관리 대책(하자기간 만료 후 후속대책(라이센스 구매, 유지보수 등) 및 소모성 물품 구매계획 등
시범사용 후 활용 및 구매계획	○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활용계획 및 추가 구매 계획 등 ○ 신청기관 경합 시 추가 구매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우대 ※ 증빙자료(구매계획서 및 예산요구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매칭절차

○ 조달청이 매칭공고를 통해 시범구매 기관 최대 5개 심의후 선정

혁선 (유형	년(시)제품 Ⅱ, 공급자:		테스트	기관(=수요기	기관) 매칭 및	! 계약	테스트·	상용화
조달청	기업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테스트기관	기업/ 테스트기관	조달청/ 기업	테스트 기관	기업
혁신제품 모집공고	제안서 제출	에안접수 평가	혁신기업 과 테스트기 관 매칭	사전업무 협약체결	에스트) 계획서 작성	구매 계약 체결	테스트 및 결과 피드백	상용화

○ 시범사용 신청기관 검토 종료 후 계약심사협의회 심사 거쳐 수요 매칭 진행, 이때 제품별·기관별 사업예산 규모 결정

구분	주요 내용	혁신제품구매운영규정
	① 수요조사 대상제품 선정	제24조
		"~·
	② 업체의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접수	제24조의2
시범구매 수요매칭	↓	
1 11-110	③ 기관의 수요조사서 접수 및 심의를 통한 매칭	제25조, 제27조
	↓	
	④ 협약체결 (조달청-시범사용기관)	제28조
↓	↓	
	⑤ 기관의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	제29조
	↓	
시범구매	⑥ 조달청에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승인	제29조
(계약)	↓	
	⑦ 구매 계약 (조달청-업체)	제30조
	↓ ○ 71174 DIEUT TIT	TII 24 T
	®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	제31조
	↓ ⑨ 시범수행 중간점검 실시	제35조
	♦ 718 8 28 27	71133 <u>—</u>
	· ⑩ 시범사용 완료 보고서 접수	제38조
사후관리	↓	
	⑪ 시범사용 결과 판정 심의 및 결과 공개	제39조, 제41조
	↓	
	⑫ 혁신제품 소유권 이전	제42조

※4회 이상 수요조사(매칭) 실시하였으나 시범구매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은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

5. 성과보고 정량목표5

가. 과업범위

-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컨설팅 보고서 및 행사 등 구매 성과를 보고한다
- ◈ 잔금 지급을 위한 선금 사용 증빙 및 과업 달성 결과를 보고한다
- ◈ 용역사 추가제안 과업 및 기타 기업지원 연계 성과를 보고한다
- 1) 주간 월간 보고서 기반 구매관련 주요 성과자료를 제출한다
 - 컨설팅 등 성과물은 완료한 다음주 주간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아래를 참고하여 선정기업별 지원 계획 흐름도 및 성과 보고

0000	0000	0000	0000	00000
① 과업목표	② <i>과업목표</i>	③ <i>과업목표</i>	④ <i>과업목표</i> ⑤ <i>과업목표</i> ⑥ <i>과업목표</i>	⑦ <i>과업목표</i>
방법	→ 방법	→ 방법	→ 방법 → 방법 → 방법 ·	→ 방법
<i>월.일.</i>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 2) 과업 목표 및 달성 수치 요약본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한다
 - 목표 초과 달성 및 미달성에 대한 대체 과업 결과 보고
 - 매 과업마다 다음을 참고한 증빙자료 첨부

과업명(예. 혁신제품 지정 컨설팅)

목적, 기대효과, 일시, 추진방법, 추진대상, 추진결과 '달성 00건/목표 00건', 사진증빙

- 3) 본 용역에 선정되기 위해 추가 제안한 과업수행 결과를 제출한다
 - 제안서상 추가 제안 과업 및「기술 협상서」반영한 과업 일체
 - 용역사의 자체 재원을 사용한 직접 투자 및 구매 또는 정부지원 사업 선정 등 개별 역량을 활용한 후속지원 등
- 나. 성과품 제출 항목

□ 과업성과

- 발주처 승인한 컨설팅 보고서
- ■매칭 건 수 및 구매의향서
- ■수요기관 확보 수, 행사 결과

2 완료보고

- ■완료계 제출 등 절차이행
- ■선금사용 증빙 자료 일체
- 검수조서 작성 필요 자료

③ 추가과업

- ■세금계산서, 투자계약서 등 ■타 기관 사업 선정 공문 등
- ■인증 및 판로 연계 지원 등

Ⅲ 사업추진 세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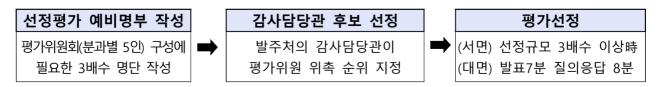
1. 선정절차

- 가. 용역사 선정: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 제271호 및 제272호 인용
 - 1) 정성평가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종합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절차	내용	일정
구매규격 사전공개	ㅇ나라장터(www.g2b.go.kr)사전규격 공고 5일 ※지방계약법 제9조의2	3. 26. ~ 3. 31.
—		
입찰공고 이 이나라장터(www.g2b.go.kr) 입찰공고 10일 + 2일 ※지방계약법 제10조제2항(추정가격 1억 미만)		4. 1. ~ 4. 12.
—		
평가적격자선정	ㅇ평가위원회 소집 및 발표평가(1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ㅇ협상적격자 선정(합산 70점이상, 고득점 순)	4. 15. ~ 4. 18.
1		
협상 개시	o 협상적격자 대상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보 o제안사업, 방법, 일정 등 협상(통보 날로부터 15일 이내)	4. 19. ~ 4. 22.
<u> </u>		
계약체결 선금지급	ㅇ협상 성립 서면 통보 및 계약체결(10일내) ㅇ착수 보고 및 과업 착수	4. 23. ~ 4. 26.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4년 12월 6월까지로 하며,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참가기업 선정: 발주처의 별도 일정에 따름
 - 1)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한 값을 고득점순으로 선정
 - 2) 발주처는 평가관련 행정절차 담당하고 용역사는 관련 업무 보조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운영절차

	기업·기술진단	운영사→선정기업	o기업이 보유한 주요 기술 및 BM 분석 o안전성, 지식재산권 보유 등 인증 및 등록 현황 o공장 보유, 협정 생산 등 기업별 지정 준비 현황			
	↓					
	의견수렴 목표설정	운영사↔선정기업	o기업 진단기반 혁신제품 지정 설명 및 대안 제시 o기업 의사를 반영한 혁신제품 지정 경로 설정 o혁신제품 지정 방법론 선택 및 목표 설정			
	1					
혁신 제품 지정 트랙	로드맵 수립·실행	운영사→선정기업	○ 혁신제품 지정 상/하반기 신청 계획 ○ 인증 및 신청 비용 관련 용역사 부담금 상세 제시 ○ 목표 5건 이상 (미)달성에 따른 (재)신청 대안 포함			
_ ¬	1					
	컨설팅/멘토링/교육	운영사→선정기업	o시간·횟수 무제한, 로드맵 기반 목표 1개를 1건으로 추진 o혁신제품 신청 불가시, 인증 등 준비 또는 판로만 지원 o집체교육 5회 진행시 정량목표 25건중 1건 차감			
	↓					
	(재)신청, 연계지원	운영사↔선정기업	o기업과 협의 후 동일분야 재신청 또는 신청경로 변경 o네트워크 기반 인증, 투자, 사업신청 등을 연계지원 o발주처의 정량목표 및 성과 인정 범위 등 업무협의			
	기업·기술진단	운영사→선정기업	○주요기술 및 제품에 대한 셀링포인트(소구점) 분석 ○연간 생산량, 인천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분석 ○공공구매, 시범구매 등 판매채널별 적합도 제시			
	1					
판로	의견수렴 목표설정	운영사↔선정기업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판매기관-부서-담당자 정의 ○채널별 적합도를 고려한 장단점, 리스크 등 설명 ○기업 현황에 맞는 예상 매출처 설정 협의 등			
지원	1					
트랙	로드맵 수립·실행	운영사↔선정기업	○예상고객 '구매자', '사용자' 이원화한 판매전략 수립 ○목표고객 세분화 및 시범구매 등록을 위한 전략 ○시범구매 관련 행정문서 작성, 과제기획, 규정적용 등			
	1					
	컨설팅/멘토링/교육	운영사→선정기업	o구매상담+구매의향서/시범구매신청을 KPI 1건으로 인정 o매칭된 수요자의 시범구매 과제 등록시 KPI 1건 인정 o집체교육 5회 진행시 정량목표 25건중 1건 차감			
행사	시범구매 참여의향서 구매의향서작성 수요기관등록	운영사	o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행사개최 및 시범구매 참여의향서 5건 확보 o 상/하반기 행사장내 구매의향서 확보 5건 이상 o 발주처의 시범구매지원단 Pool활용 수요기관 등록			

※용역사 제안 및 기술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내용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3. 프로그램 관리

- 가. 발주처의 상황에따라 보고 방식 및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 나. 보고일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부터 가장 빠른 영업일로 함
- 다. 주간보고는 반드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00까지 이메일 제출

구분	보고시기		주요내용		비고
착수 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작수계 # 수계 # 수계 # 수계 # # 수계 # # # # # # # # # # # # # # # # # # #	청렴서약서 SHE HPM With YMED 4 197 NEDD 4 20 DEC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보안서약서 # 전 # # # # # # # # # # # # # # # # #	사업총괄 대표이사 대면보고
		청렴서약서, 보안서약/	,		
선금 신청	착수일로부터 5일이내	고 문 기업용 기업용 기업용 기업용 기업용 기업용 기업용 기업	선금지급신청서 1. 1031314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사업총괄 서면보고
정기	매주 월요일	2024. X. X. ~ X. X. 2024. X. X. ~ X. X.			
보고	오전 10:00	○ <i>착수계 제출 및 선금신청(월/일)</i> ○ <i>8개기관 31개 기업 홍보(월/일)</i> ※발주처는 사업관리를 위해 수시 대면보고 요청할 수 있음			서면보고
결과 보고	계약종료후 10일이내	1. 속에게요. 가. 속 이 네. TRYCUT 인원스타보업하고 선속에는 이십. 가격이다. 개막하십일보다는 그것으로 12월 4일 14일 14일 4일 14일 14일 14일 14일 14일 14일 1	□ 주요일가 ○<		사업총괄 대표이사 대면보고

IV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가. 계약상대자(이하 '용역사')는 발주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이하 '발주처')의 과업 수행상 필요한 사항 및 과업 해석 등을 따르며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 나. 용역사는 용역 목적 및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용역사**는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라. 용역사는 제안요청사항, 과업, 비용 지출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용역사에게 있다.

2. 조직 및 인력관리

- 가. 용역사는 참여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기술과 경험을 가진 **영업전담 인력 1명**, **행정전담 인력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공공분야 실 구매자 발굴을 위한 영업 전담 인력은 과업 착수일로 부터 격주 1회 수요기관 발굴 현황 및 계획을 직접 발주처에 보고
 - 2) 주간보고서 작성, 성과물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에 능통한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발주처 요청사항 등에 지체없이 응대
- 나. 참여 인력의 과업 수행 능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발주처가 업무배제를 요청** 하면 용역사는 지체없이 **대체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1) 영업 전담 인력의 수요기관 발굴 실적이 미비한 경우 또는 행정 전담 인력의 문서작성 능력이 발주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교체 요청할 수 있음
 - 2) 이때 용역사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전임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투입할 수 없음
- 다. 과업수행 중 용역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

- 가.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수행 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용역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 나. 발주처는 과업 변경 요인 발생,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 착오,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내용 변경 전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 해지

- 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이 경우 발주처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수행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용역사에 지급
- 2) 발주처는 완성된 성과물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할 수 있고, 이때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함
- 나. 발주처는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사 귀책 사유**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과업 내용의 해석을 발주처와 달리하여 과업 수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 2) 주간보고 및 기타 발주처가 요청한 행정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3회 이상 발주 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3) 발주처와 서면 동의한 '기술협상체결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4)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사가 과업 범위를 변경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한 경우
- 5)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6) 용역사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7)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목적달성이란 계약기간내 발주처가 승인한 컨설팅 결과물 제출 포함, 정량적 목표(p2~p18) 전체를 의미함

5. 의무 및 손해의 보상

- 가. 용역사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 소송 또는 민원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1) 용역사는 제3 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할 때는 모든 책임을 부담 함
 - 2) 용역목적물 및 제3 자에 대한 손해는 용역사가 배상하여야 함
- 나. 용역사는 당해 계약 및 과업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다. 용역사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 라.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상기 용역사 귀책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용역사에 대하여 검수 완료된 성과물에 한정하여 용역대가를 지불하고,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용역사는 발주처가 검수 완료한 결과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일체 반환 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지식재산권

- 가. 용역 성과품(결과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다음을 따른다
 - 1) 발주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완성된 용역 결과물의 소유권 일체는 발주처에만 귀속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함**
 - 관계법령, 계약예규, 판례에 따라 창작자의 원리에 근거하여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저작권 등은 특약을 기재하므로 용역사가 공동소유 또는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2) **발주처는 「저작권법」**제24조의2제1항 및 특약을 근거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보유한 **저작물 등을 허락 없이 사용** 가능
- 나. 발주처는 용역사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복사·이용·공개 등을 할 수 있다

7. 지연배상금(계약이행의 지체)

-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지연배상금
- 나. 용역사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 1) 계약기간내 완료계, 용역목적물, 용역 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검수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완료계 제출 후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 날까지 기간을 산입
 - 2) 계약기간을 지나서 완료계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 3) 계약종료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용역사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는 경우는 그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
 - 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1.3**으로 정함^{*} *낙찰가 금100,000,000원인 경우 매 1일 지연배상금(금100,000,000원 x 0.0013)은 금130,000원으로 함
- 다.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 수를 "나"의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 3) 그밖에 발주처가 인정하는 용역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의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이행하는 부분이 지연된 경우
 - 1)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이 지연배상금을 납부 함
 - 2)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
 - *금100,000,000원 분담 50%의 경우 매 1일 지연배상금(금50,000,000원 x 0.0013)은 금65,000원으로 함

8.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제안요청서, 용역사의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체결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고 용역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과업 해석을 달리하여 과업 수행 지연 또는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해지사유(p23)에 해당 함

- 나. 컨설팅(문제정의 및 해결)과 멘토링(방향설정)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컨설팅은** 기업진단→목표설정→목표 달성의 방해요인 정의→방해요인제거→목표달성 과정을 거처야 하며, 이에 기반한 성과품 검수 예정
 - 2) 제안요청서의 정량목표는 **컨설팅 5회이상** 제공이며, 제안사는 **추가 과업으로 멘토링**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
 - 3) 선택의 갈림길에선 멘티(선정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멘토링 이므로 용역사는 별도의 문제정의 및 해결 과정 불필요, 단, 결과 보고서 제출 必
 - 4) 컨설팅 정량목표 1건 달성 기준은 용역사가 수립한 기업별 로드맵 기반으로 발주처가 별도 확인 통해 인정 또는 불인정 처리 함
- 다. 용역사는 용역 완료 후라도 본 과업의 결과와 관련한 발주처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라.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 등에 의하여 해결 해야 한다
 - 1)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하여 사법상 분쟁을 적정·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2) 용역사는 분쟁 기간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마. 책자, 현수막, X배너 등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스타트업파크」CI(로고)를 삽입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스타트업파크









V 입찰안내

1. 관련근거

- 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제19634호, 2023. 2. 17.)
- 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영제34214호, 2024, 2, 13.)
- 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칙(행안부령 제414호, 2023. 7. 3.)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제20345호, 2024. 2. 20.)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영제33913호, 2023. 12. 12.)
- 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지침제134호, 2023. 5. 4.)
- 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공고 제2023-53호, 2023. 3. 2.) ※본 과업 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위 관련근거를 포함한 법령 및 규정·규칙 등을 등에 따름
- 2. 입찰방법: 지역제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계약의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에 한정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다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고 영제92조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 범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않는자 이어야 한다
 -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자 이어야 한다

- 라. 입찰 참가신청자가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1)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 (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함
 - 2)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4. 기타 참가자격

- 가. 관련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통한 계약체결
 - 2) 영제2조의3의 예외 조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기의 제한경쟁 통한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학술, 연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한 경우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써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에 따른 계약 방법으로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나.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영제2조의3에 해당하여 상기의 <u>소기업·소상공인간</u> 제한경쟁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영리법인의 사업자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2자리가 네 가지(81번, 86번, 87번, 88번)등에 해당하여야 함
 - 대학의 산학협혁단 등은 82번으로써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발급 불가
 -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 필요성 인정될 경우 참여가능
 - 2) 동 과업은 특정 품질 등이 요구되어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적용할 경우 계약의 목적(혁신제품 지정등록 및 공공구매 계약체결 등) 달성 불가
 - 임의로 선정된 참가기업 5개사가 선택할 수 있는 104개 과업 종류를 소기업 인력으로 수행하는 것은 전문성 및 기술성 등 부족으로 품질 저하 예상 됨
 - 지역 네트워크 및 전문가 Pool이 풍부한 대학, 산학협력단(창업지원단) 등 소기업 확인증 발급 어려운 제안사를 배제하면 본 과업목적 달성 어려움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제도는 지방계약법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77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을 따른다
 - 1) 분담이행 방식은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 공사 등에 필요한 면허 분담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동 과업에 적용하지 않으며,
 - 2)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혼합방식 적용 않음
 - 3) 공동이행방식은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파견 수행하며 구성원 모두 자격요건(인천소재 본점)을 갖추어야 함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① 구성방식	○ 출자비율로 구성	○ 공사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면허기준 분담
② 대표자	○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③ 하자책임	○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④ 하도급	○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	○ 구성원 각자 책임 하에 하도급 가능
⑤ 실적인정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 ○규모- 실제 수행부분	○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나.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1)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 선정을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계약자 포함 2개사, 구성원별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으로 함
 -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짐
- 3) 대표사가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간 협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승인한 경우 그에 따라 선임
- 4)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
 -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 변경 가능

※구성원이 야기한 문제로 지연배상금 발생 때, P25에 따라 지연시킨 당사자만 납부

다. 공동수급체 모두는 인천관내 본점을 소재지로 두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⑥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인천지역제한**)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특수공법 **공사실적**)과 중복으로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12호의 사항(1억 미만 소기업・소상공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인천지역제한) 중복 제한할 수 있다.

- 1) 지방계약법 영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인천본점(지방계약법제9조 근거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2) 지역제한은 소기업 등 중복제한 불가능하고, 특수공법 실적 한정하여 중복 제한 가능. 다만, 추정가격 1억미만 용역으로써 소기업간 제한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천지역 제한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음
- 3)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4호에 해당하여 특정 품질 등 요구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대가의 지급은 다음의 방식으로 한다

- 1)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제출
- 2)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함
-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 협의하에 하되,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및 전원 기명 날인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 아. 보증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할 수 있다

5. 추진일정

가. 구매규격 공개: 2024. 3. 29.(금) ~ 2024. 4. 3.(수)

나. 제한입찰 공고: 2024. 4. 4.(목) ~ 2024. 4. 16.(화)

다. 가격입찰 제출: 2024. 4. 9.(화) ~ 2024. 4. 16.(화) 10:00

라. 제 안 서 제출: 2024. 4. 16.(화) 14:00 ~ 15:00(현장 평가위원 추첨)

마. 제 안 서 평가: 별도 안내 예정

바. 협상대상 통보: 제안서 평가 후 3일 이내

※추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6. 제안서 발표평가

가. 예정일시: 2024. 4. 19.(금) 14:00

나. 장 소: 인천스타트업파크(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다. 평가시간: 발표평가 '2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순으로 정함(첫 번째 제출자가 첫 번째로 발표)

마. 발표방법: 총괄책임자(PM)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바. 다음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1)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제안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2) 제안서 발표는 발표자 1인 및 보조자 2인까지 참여(발표자포함 최대3인 허용)
- 3)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4) 보완 요구한 서류가 별도 안내한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7. 제안서 평가 방법(협상에의한 계약)

-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제4절」제안서의 평가
- 나. 평가비율: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정량평가 10%+정성평가 70%)와 가격평가 20%로 구분한다
 - 1) 기술능력평가의 정량 10%는 제출된 자료 근거하여 발주처 자체 평가
 - 2) 기술능력평가의 정성 70%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 본 사업은 공공기관 네트워크 및 전문인력 투입 등이 중요시되는 사업으로써 정성평가 가중치를 10% 높게 배점 한도를 조정 하였음
 - ※제3절 '4.제안서의 평가 다목' 평가 항목과 배점 한도를 10점 범위 내 조정 가능(행안부 예규 제277호)
- 다. 평가방법: 제안발표서 제출 당일, 현장 추첨으로 **7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행안부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인용(행안부 예규 제272호)
 - 1) **발주처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및 고령자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협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음
 - 평가위원으로부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 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 순위를 다시 선정
 - ※시전접촉이란? 제안사 또는 관계자들이 SNS, 문자 등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에게 용역 참여 했다고 흘리고 다니는 것을 말함
 - 3) 정성평가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정함
 -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행인부 지지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1절 그 밖의 시항 3 소수점 차리방법 / 인용행인부 예규 제272회

8.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나. 평가항목 및 배점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기준 등을 따른다
 - 1)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정량평가
 -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등 인용

구 분		평가항목		비고
	계		100	
		1. 인천소재의 인천시 지자체(인천시, 8구, 2군),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 교육청, 공공기관, 대학(교) 발급한 사업 참여의향서 가. 1개~2개(1) 나. 3개~4개(1) 다. 5개이상(1) ※사전규격공고일 당일부터 발급된 참여의향서만 인정하며 제안사를 당사자로하는 서류(예. 산학협력단 제출한 소속대학발급본) 등은 불인정	3	중복합산 최대 3점
		2. 핵심인력 가. 공공기관, 학교 등 기관 행정 경력 2년이상(1.5) 나. 공공분야 판로지원 담당 경력 1년이상(1.5) ※동일인물의 가목 및 나목 중복 불허하며, 사전규격공고일 기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상 또는 별도 담당업무 증빙 문서 제출만 인정	3	중복합산 최대 3점
기술 능력 평가	정량 (10)	3. 경영상태평가 가.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 '별표9'인용	3	등 급 별 최대 3점 (p13)
		4. 신인도 가. 여성기업(1) 나. 장애인기업(1) 다. 사회적경제기업 1)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1) 2) 인천광역시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0.5)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1)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1) ※인천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인용	1	중복합산 최대 1점

※행안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 한도'」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은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함(행안부 예규 제272호)

기 능력 자	정성 (70)	1. 사업수행계획(30) 가. 참가자모집 및 평가선정 계획 1)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모집할 것인지 시례를 비탕으로 제안 (발주처는 인천소재 기업모집 방안에 높은 관심 있음) 2) 제안사만의 개별 네트워크 기반 홍보 채널만 인정 3) 참가기업 선발을 위한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과 평가가능한 기업 수 및 총 소요 시간 제시 ※발주처는 분과별 전문가 5인 기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수당을 지급함 용역사는 평가장 안내, 다과 등 비품 준비 등을 담당 나. 5개사 대상 컨설팅 수행 계획(p2~18, 20반드시 반영) 1) 혁신제품 지정 준비를 위한 27종류의 컨설팅 방안 2)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19종류의 컨설팅 방안 3) 선정기업의 판로지원 위한 58종류의 컨설팅 방안 3) 선정기업의 판로지원 위한 58종류의 컨설팅 방안 ※컨설팅 수행 계획에는 용역사가 제공하는 인증비, 신청비 등 각 종제반 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할지 구체적 명시 하여야함 다. 행사개최 계획 등 1)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대한 행사개최 방법 2) 하반기 불업페스티벌 연계한 구매상담회 세션 기획 3) 실구매 가능한 수요기관·구매담당자 섭외 방안 등※불업페스티벌이란 참업지원 유관기관, 대학생 등이 함께 하는 인천시 스타트업 축제(주제 '실증기반 투자-글로벌진출') 2. 기술·지식능력(25) 가. 1:1 대면 컨설팅 단계별* 소요되는 총시간과 효과를수행 경험 등 사례와 함께 제시 *컨설팅 단계란 사전진단으문제정의으목표설정으컨설팅 수행을통한 문제해결으(예상)성과으사후관리 등을 의미함 나. 공공분야 실구매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발주처 추진용역사업 참여 유인책 다. 컨설팅 목표 또는 과업 목표 미달성시 대안·해결방안 등라. 컨설팅 종류별 난이도 격차가 있고, 건당 금액을 평균화하기 어려운데, 과업 적정 수준을 정의한 기준을 제시 1) 혁신제품 지정등에 필요한 인증 비용 지원 수준 등 2) 1건의 컨설팅으로 보기 어려운 쉬운 난이도의 과업은추가로 무엇을 선정기업에게 제공할 것인지 등 3. 인력 및 관리기술(15) 가. 참여 인력의 당해 연도 사업 참가의향서 또는	70	평가위원회의 제안사 발표평가
		3. 인력 및 관리기술(15) 가. 참여 인력의 구성		
가격 평가	가격 (20)	나라장터 투찰금액	20	※평점산식: p35

9. 평가항목 배점산식

가. 입찰가격(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1)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2)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3)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u>최저입찰가격</u>)+[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수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2)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행안부 예규 제23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 준용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134호) 제9조제3항1호를 따른다

	평점	zi Q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 64	적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3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2.9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2.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1

- 1)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10. 협상 대상자선정 및 협상절차

-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종합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1)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2)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는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함
- 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최종 <u>평가점수가 1위</u>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조건 등을 협상한다
 - 1) 다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금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비중)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라. 발주처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한다
 -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추진
 - 2) 발주처는 해당 사업의 과업수행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3)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마.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1) 발주처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2) 모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제출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본 문서의 p34 상세히 읽고 작성)

목차	작성내용
I.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전략, 장점, 예상 성과 등을 요약
Ⅱ. 일반현황1. 제안사 일반현황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Ⅲ. 전략 및 방법론	• 주요 연혁, 자본금, 최근 3개년도 매출액 등 • 조직도, 구성원별(투입인력, 컨소시엄사) 업무분장(영업, 행정, 컨설팅) 등 • 전체 투입인력의 주요 이력 및 참여 비율(4대보험/참가의향서 등 증빙)
1. 사업 이해도	 발주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증기업의 판로지원 및 공공기관 실 구매자 Pool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한편, 선정된 5개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104종 내외 과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 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등록을 위한 유인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대한 상반기 행사 및 하반기 붐업페스티벌 구매상담회 세션에 필요한 관계자들을 모두 섭외할 수 있는지? 선정기업의 준비상태(혁신제품지정 준비/완료 수준)에 따라 과업 난이도가 상이한데 어떠한 기준으로 컨설팅 1회 KPI달성을 정의할 것인지? 상세 검증하고자 함 ※발주처가 요구하는 과업 목표 및 기대 성과물에 대하여 제안사의 시각에서 작성
2. 추진 전략	 명시된 정량적 목표(기업모집 경쟁률, 컨설팅 수행, 판로지원 등) 달성 전략 제안사가 선정기업의 보유기술 진단 기반 수립한 기업별 로드맵 실행 전략 104종 내외 컨설팅 종류를 수행할 제안사만의 특별한 전략 제안사가 본 용역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제안한 추가 과업에 대하여 어떠한 전략을 실행하고, 그 성과품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상세 기재 정량적 수치 기반 실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및 성과* ★예)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공사 6명의 실 구매자들로부터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수요제품 스펙을 회신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2회 판로상담 추가 수행 및 정부과제안 도출
IV. 예산계획 V. 사업 관리	•과업 진도별 집행되는 예산액과 그 지출 일정
1. 관리방법론	 컨설팅 품질, 인력, 과업 진도, 보고 의무 이행 등 전반적 사업 관리 방법 선정기업이 104개 내외 과업 범위내 임의로 5가지 컨설팅을 요청하고, 용역사의 진단과 다른 의견으로 로드맵 목표를 수립하고자 하였을 경우 관리 방안 용역사가 최선을 다하여 과업 성과물을 만들었다 주장 하였으나 발주처 확인결과 수진기업은 받은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 해석과 다른 경우 및 요청사항 처리 등을 위한 방안
2. 일정계획	•참가기업별 컨설팅 제공 일정,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자 섭외 일정 등
3. 성과관리	•주요 산출물 내용 및 제출 시기 등
VI. 그 밖의 사항	
1. 기밀보안	•취득한 모든 데이터, 정보, 영업기밀, 지적재산권 현황, 개인정보 등 보호 방법 •행사 당일 섭외된 실 구매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불참을 가정하고 해결안 제시
2. 비상대책	• 과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정의하고 예방 및 사고대응안 제시 [*] *안전사고 상세 정의-예방-대응 계획 없으면「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 위반할 것으로 추정되어 평가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에 따른 「별지 5. 제안서 서식」 준용(조달청지침 제134)

2. 제안서 작성 지침

- 가.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제안서는 백색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한다
- 다. 백색 A4 세로방향으로 작성하여 단면 및 단색으로 인쇄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부에 한하여 A4 가로 방향 작성 또는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라.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 마. 제안요청서 내용의 범위 외에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다
- 바.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된 수치로 작성하여야 한다
-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 자. 별지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차.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1) 본 문서 p34 기술 능력 평가의 정성평가(70%) 평가항목 및 p37 작성 내용을 상세히 읽고 제안서 및 발표에 <u>반드시</u> 반영
 - ※제안요청서의 평가관련 안내 사항을 근거로 발주처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을한 업체를 선발할 예정
- 2)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 3) 지방자치단체 및 발주처의 정책변화 등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요령

-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요구사항보다 향상·개선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나.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에 따라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표지, 간지 등을 포함하여 제안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다.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페이지 수에서 제외) 으로 제출한다
- 라. 제안서 및 요약서는 A4(세로) 용지규격을 사용(부득이 A3를 사용하는 경우 1/2로 접음)하여 <u>3홀 바인더 세로 편철 제출</u>이 원칙이며, 제안서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시각 자료는 컬러를 사용할 수 있다
 - 1) 제안서는 한글문서로 작성하고, 발표자료는 PPT로 제작
- 2) 원본파일 USB 1개에 저장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제출된 USB 반환하지 않음)
- 마.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효력

- 가.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1) 제안서에 기재된 추가 과업 등에 따라 평가상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함
- 2) 제안서 내용은 본 용역의 정량적 목표로 설정하고 관리 ※제안내용 불이행시 지연배상금(p25)을 지체 매일 1일마다 납입 또는 잔금에서 차감처리 함
- 나. 발주처는 <u>기술협상 과정에서 제안사에 추가 제안</u>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다. <u>제출된 제안서의 내용</u>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u>변경할 수 없음</u>

6. 제안서 제출안내

- 가. 제안서 제출 시기 및 방법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한다
- 나. **가격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투찰** 하며,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다. 발표 자료에 삽입된 동영상이 실행 안 될 경우,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라.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시, 자료 보완 요청 등을 위하여 <u>담당자 연락처 정보를</u>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u>잘못된 연락처 기재 등을 원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u> <u>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한다</u>
- 마. 제출된 제안서 및 USB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바. 제안서 제출 등 관련 문의는 다음의 담당자에게 한다
 - 1) 입찰문의: 재무회계팀 박세희 과장 🕾 (032)260-0732
 - 2) 과업문의: 스타트업파크센터 이호림 과장 🕾 (032)228-1219

7. 제출서류: (재)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6층 제출

서류명	수량	내용	제본방법	비고
제안서	2부	 표지, 간지 등 포함 100쪽 이내로 작성 한글 문서 전자파일 원본은 USB에 저장 후 발표 자료와 함께 제출 2부를 3홀 링(O또는D) 바인더 제출 		
발표 자료	2부	•PPT 전자파일 원본은 USB에 저장 후 제안서와 함께 제출 •2부를 3홀 링(O또는D) 바인더 제출	3홀바인더 세로 좌편철	
부속 서류	2부	•하단 p41 제출서류 목록 일체 •증빙자료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요망 •정량평가 자료 및 기타 증빙 서류 •2부를 3홀 링(O또는D) 바인더 제출		

※제안서 및 발표 자료는 전자문서로 제작하여 USB 1개에 저장 후 제출

8. 제출서류 목록

순번	구 분	대표사	공동수급시 (제출주체)	별지서식
1	용역 참가 신청서 1부	필수		제1호
2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1부	필수	대표사	제2호
3	위임장 1부	해당시		제3호
4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필수	모든 구성원	제4호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각서(서약서)	해당시	대표사	제5호, 제6호
6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필수		
7	인감증명서	필수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필수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필수	모든 구성원	-
10	수행실적 총괄표 - 유사 사업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포함	해당없음		제7호
11	수행실적 증명서	해당없음		제8호
12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 전자입찰 - 가격제안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산출내역서는 전자입찰시 첨부요망	필수	대표사	제9호 제10호
13	서약서 1부	필수		제11호
14	합의각서 1부	해당시		제12호
15	보안각서 1부	필수	ㅁㄷ ㄱ서이	제13호
16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필수	모든 구성원	제14호
17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필수		제15호
18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필수		제16호
19	사용인감계 1부	필수	대표사	제17호
20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투입 인력의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필수	모든 구성원	-

【별지 제1호 서식】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 용역참가 신청서 업 명 대표자 체 주 대표사 전화번호 소 F A X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구성워 주 소 전화번호 F A X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구성워 주 소 전화번호 F A X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은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합니다.

붙 임: 관련 서류 각 1부.

2024년 00월 00일

대표사업체명 대표자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절 취 선〉-----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용역참가 접수증

접수번호	발주처 -		접수일자	2024년 00월 00일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접수자	직책 성	명		(인)

접수번호

		처 리 기 간				
※ ∘	나리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인등록번호 업자등록번호)	
신청서 주 소 대표자		7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	찰	입찰(제안)공고 번 호	인천테크노파크공고 제2024 - 호	입:	찰(제안) 일자	
개 .	요	입찰(제안) 건 명				
입 보증 [.]	찰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
대리'	인	,	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게 위임합니다.	사 용	본 입찰(제안 다음과 같이)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합니다.
방문시		성 무민등록번의		인 감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사업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4. 00. 00.

신청인 (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 구매**」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 00. 00.

대표자 : (인)

대리인: (인)

- ※ 지참서류 : 신분증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업체설립년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년 개월)
○ 주요연혁 - - -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1. 계약건명: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
과 같다.						

-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000: %
 - 2. 000: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 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

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화한다.
-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 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워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각 서

우리 회사 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회사명:

대 표 자: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계약담당자 귀하

작성 제출하지 아니함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완료일자	비고

주)

-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작성 제출하지 아니함

수행실적증명서

	업체명				대 표	자				
시청이	영업소재지				전화변	<u></u> 호				
신 청 인	사업자번호			법	인등록	÷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심사 :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수행	사 업 명				구 .	분				
실적	사업개요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수	행 또는 납	품실적		
710	게ㅋ한호	게ㅋㅋ시	계기기신) - > · C	(VAT	포함)	완료일자	지 분율(%)	실적(원)
			우	l 사실을	을 증명	함.				
							년	월	일	
중 명 서	기관명:				(인)	(전화번호	<u>-</u> :)		
발급기관	주 소:									
	발급부서:		담당?	자 :		(전화번호	<u> </u>)		

[주]

-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5. 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이 없으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6.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는 직인이 없어도 실적으로 인정

【별지 제9호 서식】 ※ 전자 투찰(www.g2b.go.kr)

가격 제안은 전자 투찰로 진행하며									
	본 양식을 작성/제출하지 아니함								
	가 격 제 안 서								
입 찰	사 업 명								
내 용	금 액	금 원정 (₩)						
	대 표 사 업 체 명								
입 찰 자	주 소								
	대 표 자								
첨 부		본인은 위의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출내역서 1부							
		2024년	00월	일 (al)					
		대표사업체명 대표자		(인)					
인찬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전자투찰시 첨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공종별	세부내역	금 액	산출기초	비고
총사업비				

【별지 제11호 서식】

서 약 서

- 회 사 명: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자 :

당사는「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중제품 시범구매」용역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00월일업체명 대표자(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입 찰 일 자	2024년 00월 00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0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성 몃 (이)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주사무소 소재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별지 제13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사)은 귀원이 발주한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1. 본인은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년 00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1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 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하 "뇌물"이라 한다)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 1.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인천크노파크의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규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용역,물품)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뇌물 공여 등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 3.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00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별지 제16호 서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 용역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발주처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4년 00월 일

서약자: (인)

【별지 제17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실증제품 시범구매」 용역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4. 00.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